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52871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문현성, 박승수, 노동환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김희경

변론 종결 2021. 1. 22.

판결 선고 2021. 2.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5,911원과 그 중 7,416,451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1. 21.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3. 6.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3. 22. 접수 제32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7.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금액 2,700만 원, 보증기한 2020. 7. 1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7. 16. 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9. 7. 17. 분할상환금 연체로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13.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7,416,451원을 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료는 81,860원, 대지급금 잔액은 607,600원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B, C의 재산분할약정

피고 B는 2019. 3. 6. 배우자인 피고 C와 협의이혼하면서 피고 B 소유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9. 3.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보증료와 대지급금 잔액을 합한 8,105,911원(= 7,416,451원 + 81,860원 + 607,6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인 7,416,4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서 상당성을 초과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C는 1987. 6. 16. 피고 B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E생 아들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다. 피고 B, C는 2008. 4. 1. 피고 B의 외도 등으로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등을 피고 C 소유로 재산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가, 실제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다.

(2) 그 후 피고 B, C는 다시 2019. 1. 14. 피고 B의 알콜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夫 B와 妻 C는 금일부로 협의이혼한다.
2.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B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고, 양자는 향후 명의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상호 협조한다.
3. 위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C는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B 명의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없고, 이후 B는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피고 B, C는 2019.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9. 3.

4.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2019. 3.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한다'는 2019. 3. 6.자 재산분할협의서가 피고 B, C 사이에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2019.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9. 2. 26. 고양시 일산동구 1으로 전출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5) 협의이혼 성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3억 5,5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J,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① 2014. 11. 13. 채권최고액 6,000만 원, ② 2015. 8. 21.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③ 2016. 5. 9. 채권최고액 5,6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으며, 그 피담보채무는 합계 216,524,000원이었다. 피고 C는 2019. 8.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다.

(6) 피고 C는 2010년경부터 특수학교 음악치료수업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해오고 있고, 2017년 730만 원, 2018년 900만 원, 2019년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7) 협의이혼 성립 당시 피고 B는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는 아버지가 구입해준 2012년식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2019. 9. 18.자 피고 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당시 피고 B는 협의이혼 성립 이전에 발생하였던 채무로,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6,524,000원, ② 보증채무 366,930,000원, ③ 신용대출채무 50,729,000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다 제1호증 내지 을다 제10호증의 3, 을다 제12호증, 을다 제14호증 내지 을다 제19호증, 을다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피고 B는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는 1987. 6. 16. 피고 B와 혼인하고 2019. 3. 6. 협의이혼에 이를 때까지 약 32년간 아들 1명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피고 C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피고 C는 2010년경부터 협의이혼에 이르기까지 특수학교 음악치료수업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올렸던 점, ③ 피고 B가 근무하던 회사의 채무에 직책상 보증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B의 보증채무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 소유 승용차는 2012년식 스포티지로서 이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협의이혼 성립 당시 그 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⑤ 피고 B, C는 재산분할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채무자인 피고 B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⑥ 피고 B,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 B에 있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고 C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 C의 협의이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⑧ 협의이혼 성립 당시 부동산 이외에 피고 B의 적극재산이 모두 밝혀지지 않는 점, ⑨ 협의이혼 성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B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105,911원과 그 중 7,416,4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1. 21.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고홍석

별지